

(앞 쪽)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

작 성 요 령

1.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(자구)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 연도분부터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2.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⑥부채비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4. ⑦기분부채비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5.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.